

민생노동국 공포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의 예산반영 현황 보고

□ 관련근거

-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5조의 2(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)

□ 공포 조례별 예산반영 현황 (2023년 5월~2024년 4월)

연번	공포일	구분	조례명	예산반영 현황 및 향후 계획
1	'23.05.22.	제정	<p>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</p> <p>· 반려식물 관련 산업분야 육성 근거 마련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3년 1,056백만원 ▶ '24년 1,056백만원 ▶ '25년 1,209백만원(안) ※ (세부사업) 광역반려식물병원 운영,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·운영,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 보급 지원
2	'23.05.22.	제정	<p>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</p> <p>·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·시행에 따른 법령 위임내용 규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3년 178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세부사업) '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' 중 '지역상권 실태조사' 및 '지역상생구역 업종제한 조정가이드 컨설팅 용역' ▶ '24년 14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세부사업) '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' 중 '지역상권위원회 운영' ▶ '25년 7백만원(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세부사업) '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' 중 '지역상권위원회 운영'
3	'23.05.22.	제정	<p>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</p> <p>·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3년 743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세부사업) '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' 중 '자치구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' ▶ '24년 2,705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세부사업) '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' 중 '자치구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' (세부사업) 착한가격업소 활성화(배달료) (세부사업) 착한가격업소 활성화(지역사랑상품권) ▶ '25년 1,791백만원(안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세부사업)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
연번	공 포 일	구 분	조 례 명	예산반영 현황 및 향후 계획
4	'23.05.22.	전부개정	<p>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</p> <p>· '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' 및 '서울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' 통합</p> <p>·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·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근거 등 마련</p>	<p>▶ '23년 100백만원 ※ (세부사업)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</p> <p>▶ '24년 303백만원 ※ (세부사업)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, (세부사업)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</p> <p>▶ '25년 1,695백만원(안) ※ (세부사업)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, (세부사업)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</p>
5	'23.05.22.	일부개정	<p>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(제6조, 제7조, 제10조, 제19조, 제22조, 제24~25조, 제26조, 부칙 제2조)</p> <p>· 노동기본계획 수립·시행 시기 변경</p> <p>· 위원 해촉 사유, 회의 일정 통보시기 등 정비</p> <p>· 노동안전보건, 감정노동, 가사노동 분과위원회 등 신설</p>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
6	'23.05.22.	타법개정	<p>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부칙 제4조)</p> <p>· 노동기본계획 수립 시기 변경, 위원 해촉 사유, 회의 일정 통보시기 등 정비</p>	▶ 해당사항 없음 ※ (타법개정) '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'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
7	'23.05.22.	타법개정	<p>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(제3조)</p> <p>·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변경</p>	▶ 해당사항 없음 ※ (타법개정) '서울특별시 조례 만(滿) 나이 일괄개정조례'에 따른 조문 정비
8	'23.07.24.	일부개정	<p>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(제3~6조)</p> <p>· 조의 제목 및 용어 변경</p> <p>· 실적보고, 회계감사, 성과평가 신설</p> <p>· 보조금 신청, 교부 등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준용</p>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
9	'23.07.24.	일부개정	<p>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(제13~14조, 제16조)</p> <p>· 소비자정책위원회 비상설로 전환</p>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
10	'23.07.24.	일부개정	<p>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(제13조)</p> <p>·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비상설로 전환</p>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
11	'23.07.24.	일부개정	<p>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(제7조)</p> <p>·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 시한 변경</p>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

연번	공 포 일	구 분	조 례 명	예산반영 현황 및 향후 계획
12	'23.07.24.	타법개정	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(제4조의3) · 임기 만료 전 위원 해촉근거 마련	▶ 해당사항 없음 ※ (타법개정) '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'에 따른 조문 정비
13	'23.07.24.	타법개정	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제7조) · 임기 만료 전 위원 해촉근거 마련	
14	'23.07.24.	타법개정	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(제15조의2) · 임기 만료 전 위원 해촉근거 마련	
15	'23.10.04.	일부개정	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(제5조, 제18조, 제18~19조) · 노동환경개선계획을 '노동기본계획'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 ·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비상설로 전환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
16	'23.10.04.	일부개정	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(제5조, 제12조, 제14조, 제37조, 제39조, 제40조, 제59조) · 용어정비, 법인 정관변경·주주및임원변경 신고기한,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 변경 · 안전한 수산물 유통 의무 신설 · 축산부류 거래방법 규정 삭제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
17	'23.10.04.	일부개정	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(제1~2조, 제4~5조, 제7조) · "유급병가지원"을 "입원 생활비 지원"으로 변경 · 부칙의 한시적 지원내용 삭제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
18	'23.10.04.	일부개정	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제7조) · 대규모재난 종료 시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및 이행에 대한 평가의무 신설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
19	'23.12.29.	제 정	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(제정) · 서울 소재 대학생 아침밥 지원 근거 마련	▶ '23년 253백만원(추경) ▶ '24년 765백만원 ▶ '25년 887백만원(안) ※ (세부사업)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
20	'23.12.29.	일부개정	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(제6조, 제6조의2, 제6조의3) · 소상공인 정책지문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

연번	공 포 일	구 분	조 례 명	예산반영 현황 및 향후 계획
21	'23.12.29.	일부개정	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제8조) · 식품위생법 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·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업종전환폐업 지원사업 실시 규정	▶ '24년 10,500백만원 ▶ '25년 14,000백만원(안) ※ (세부사업) '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' 중 '소상공인 안전한 폐업지원'
22	'23.12.29.	일부개정	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(제7조, 제11조) ·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위탁 실시 신설,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실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화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
23	'23.12.29.	타법개정	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(제8조) ·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변경	▶ 해당사항 없음 ※ (타법개정) '서울특별시 조례 일부어 투 표현 등의 준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'에 따른 조문 정비
24	'23.12.29.	타법개정	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(제20조) ·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변경	
25	'23.12.29.	타법개정	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(제5조) ·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변경	
26	'23.12.29.	타법개정	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(제8조) ·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변경	
27	'23.12.29.	타법개정	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제11조) ·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변경	
28	'23.12.29.	타법개정	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(제13조) ·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변경	
29	'23.12.29.	타법개정	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(제4조의2) ·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변경	

연번	공 포 일	구 분	조 례 명	예산반영 현황 및 향후 계획
30	'24.03.26.	일부개정	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(제5조의2, 제6조, 제8조) ·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실시 규정 및 관련사업 시행 단체 지원 규정 신설 · 소상공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규정 및 수립내용 신설	▶ '24년 23,743백만원 ※ (세부사업) 소상공인의 날 행사, (세부사업) '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' 중 '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' (세부사업)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▶ '25년 26,550백만원(안) ※ (세부사업) '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' 중 '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' 및 '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지원' (세부사업)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
31	'24.03.26.	일부개정	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(제2조, 제7조의2, 제10조의5) ·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정의 및 지원 규정 신설	▶ '24년 750백만원 ▶ '25년 300백만원(안) ※ (세부사업) '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' 중 '자치구 소상공인 및 단체지원'
32	'24.03.26.	일부개정	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(제2조, 제14조) · "시장정비사업" 및 "시장정비구역" 정의 신설 · 시장정비사업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특례 적용대상 변경	▶ 해당사항 없음 ※ 비예산